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신장식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2648
----------	-------

발의연월일 : 2025. 9. 3.

발 의 자 : 신장식 · 황운하 · 김선민
차규근 · 김남근 · 한창민
장철민 · 이주희 · 서왕진
이용우 · 김준형 · 김재원
강경숙 의원(13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구직자가 면접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교통비, 숙박비 등 다양한 비용이 소요되는데, 소득이 없는 구직자에게 이러한 비용은 상당한 경제적 부담이 되고 있음.

또한 면접수당은 단순한 실비 보전의 의미를 넘어, 구직자가 면접 준비와 참여에 투입한 시간과 노력을 존중하고 보상하는 성격을 지님. 채용 면접은 구직자의 자발적 요청이 아니라 구인자의 인력 수요에 따라 진행되는 절차인 만큼,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을 구직자에게만 전가하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음.

이에 채용 과정에서 면접을 시행하는 경우 구인자의 면접수당 지급과 지급 여부와 기준의 사전 통보를 의무화함으로써 채용절차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강화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9조의2 신설 등).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신장식위원이 대표발의한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2646호) 및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2647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조의2(면접수당의 지급) ① 구인자는 면접시험에 응시하는 구직자에게 수당(이하 “면접수당”이라 한다)을 지급하여야 한다.

② 구인자는 면접수당의 지급 방법과 지급 금액을 구직자에게 사전에 알려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면접수당의 기준 금액과 지급 방법은 면접 시험에 소요되는 비용, 대면 여부 등을 고려하여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제17조제4항을 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5항(종전의 제4항) 중 “제3항”을 “제4항”으로 한다.

④ 제9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면접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 구인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u><신 설></u>	<u>제9조의2(면접수당의 지급) ① 구</u> <u>인자는 면접시험에 응시하는</u> <u>구직자에게 수당(이하 “면접수</u> <u>당”이라 한다)을 지급하여야</u> <u>한다.</u> <u>② 구인자는 면접수당의 지급</u> <u>방법과 지급 금액을 구직자에</u> <u>게 사전에 알려야 한다.</u> <u>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면</u> <u>접수당의 기준 금액과 지급 방</u> <u>법은 면접 시험에 소요되는 비</u> <u>용, 대면 여부 등을 고려하여</u> <u>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u>
제17조(과태료) ① ~ ③ (생 략) <u><신 설></u>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 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 하는 바에 따라 고용노동부장 관이 부과·징수한다.	제17조(과태료) ① ~ ③ (현행과 같음) <u>④ 제9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u> <u>면접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u> <u>구인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u> <u>과태료를 부과한다.</u> <u>⑤ -----제4항-----</u> <u>-----</u> <u>-----</u> <u>-----.</u>